

第61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7月 1日 (月) 10時 07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 1面

(10時 07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되는 것 같고 여러 운영위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불초 소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아무런 대과없이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분명 발전적이어야 되고 점진적이어야 될 운영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그러지 못하고 자리를 뜨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더운 날씨에 몸조심하시고 오늘은 우리 의회의 위원회조례를 심의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玄壽漢委員長께서 동의를 해주신 종로신문 구독에 관한 일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의안계장 먼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係長 洪柱喆 議案係長 洪柱喆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

거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6년 6월 19일 安哲柱議員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6월 21일議長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安哲柱議員 外 4人 發議)

(10時10分)

○委員長 羅在岩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安哲柱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安哲柱議員입니다.

제2대 종로구의회에서 처음 구성되었던 운영위의 마지막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하여 '96년 5월 31일까지 5년 동안에 상임위원회별 의안처리 통계에 의하면 시민행정위원회의 의안처리 건수는 213건인데 비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처리 건수는 33건

에 불과하여 의안처리 건수만을 비교해 볼 때 무려 6.5배의 심한 업무 격차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의안처리에만 국한된 결과로 끝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기타 안전처리 등 타 업무에까지 같은 비율로 가중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시민행정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하고 재무국 소관 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의 명칭을 재무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상임위원의 선임 규정을 조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국회법 타자치구 위원회조례 등을 검토 분석하는 등 발의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최상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질의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별 의안과 처리 업무의 적정 배분을 통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8
----------	-----

발의년월일: 1996. 6. 19

발의자: 안철주의원의외4인

가. 제안이유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의안, 청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기타 안전 처리 등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명칭 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재무건설위원회”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2호 및 동항제3호)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중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2호)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3호)
- 상임위원장의 임기 제5조제1항 중 단서규정 삭제(안 제5조제1항)

- 최초의 상임위원과 임기만료 상임위원의 선임 규정 조문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참고자료 : 별첨

- '91. 4. 15~'96. 5. 31. 위원회별 안전처리현황

- 3개 위원회로 구성된 타자치구 위원회별 소관 사항

마. 개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시건설위원회”를 “재무건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다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도시건설위원회”를 “재무건설위원회”로, 가를 나로, 나를 다로 하고,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같다)는 최초의 임시회 집회 회기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상임위원의 임기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료되어 차기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때에는 차기 상임위원회 임기 개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새로 선임된 상임
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 9인 2. 시민행정위원회 : 11인 3. 도시건설위원회 : 9인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 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3. 재무건설위원회 : 9인(개정)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 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 칙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2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 사하지 아니하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2. 시민행정위원회 가. 문화공보실, 감사실 및 시민봉사실 소관 에 관한 사항 나.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시민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종로구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건설위원회 가.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 운영위원회 가. - 현행과 같음 - 나. " 다. " 라. " 2. 시민행정위원회 가. - 현행과 같음 - 나. " 다. (삭제) 라. - 현행과 같음 - 마. " 3. 재무건설위원회 가.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신설) 나.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 다. 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다만, 새로 상임위원 이 선임되지 않을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 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단서규정 삭제)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각 상임위원회에	제10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지방의회 의원 총

<u>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u> <u>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한다.</u>	<u>선거후 최초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같다)는 최초의 임시회 집회 회기내에 구성하여야 한다(신설)</u> <u>②상임위원의 임기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료되어 차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때에는 차기 상임위원회 임기개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신설)</u>
○委員長 羅在岩 安哲柱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6년 6월 19일 安哲柱議員 外 4人의 議員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간에 소관 국 조정 즉 재무국을 시민행정위에서 도시건설위로 이관시키는 일이 하나 되겠고, 두번째는 도시건설위원회 명칭을 재무건설위원회로 개정하는 일이 하나 되겠고, 또 하나는 개원 의회나 임기만료 위원회의 차기 위원회 구성 시점을 지금까지는 구성될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조례의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가 되겠습니다. 「1항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규정한 국회법을 참고적으로 살펴보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1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둔다. 2항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준하는 국회의 회의에서 선거한다」 3항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는 원 구성을 집회 후 3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을 못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행정위원회는 3실을 포함한 5개 국,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을 포함한 2개 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다만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여기서 단서규정이 그동안 좀 이론이 있어서 이 사항을 금번 개정안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회별 안전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개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건수가 되겠습니다. 총 246건 중에서 시민행정이 213건을 다루었고 도시건설은 33건만 다룬 셈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단서규정은 새로운 상임위원 선출 시점에서 지나친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어 이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기간내에 상임위원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 공백상태 초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1, 2항 신설은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 시점에 대한 이론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규정기간내에 위원회를 두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 스스로가 위법의 율가미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과 같은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거규정에서 이 조례가 시행 전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조례 개정 공포 전 오늘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만 되고 공포가 안됐을 경우에는 내일 모레 선임되는 상임위원 선출의 적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집약한 발전적인 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제안의원이신 安哲柱議員 답변식으로 나와주시고 만지지탄이 있습니다. 이것 처음 만들 때부터 조금 균형이 안 잡혔다. 시민행정위원회는 3실, 3국, 1소 많은 국과 실, 1소까지 해서 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싶은데 늦게나마 우리 安哲柱議員께서 잘 조정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마는 이중에서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조금 전에 蔣昭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안을 참고로 하셔서 거기 보면 검토의견에 공백상태, 상임위원 선출의 공백상태 초래 소지 내지는 구성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 議員 스스로 족쇄를 매는 경우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炳文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炳文委員 李炳文委員입니다. 이번 종로구의 회위원회조례 개정 중 재무국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을 하는데 왜 타구를 보니까 총무국이 많이 도시건설위원회로 편입했는데 왜 재무국을 도시건설로 소관업무를 이관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저희 종로구와 종로구의회와 같이 3개 위원회로 구성된 타구의 현황을 봤을 때 종구의 경우에는 총무시민보건의위원회에 총무국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

에서는 재무국이 총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총무국이었고 동작 같은 경우에는 총무, 재무쪽이었는데 여기에서 소관사항의 최대 관점은 시민국과 재무국으로 어느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동안에 의안처리 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 재무국 의안이 전체가 75건이었고 시민국 소관사항이 32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의 업무 특성으로 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수증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로간에 업무의 밀접성 때문에 재무국을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현재의 재무국 75건 의안처리 건을 도시건설로 넣었을 때 전체 건수는 이미 처리했던 것을 기준잡았을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108건, 시민행정위원회는 138건으로 시민행정위원회 11명이 평균 12건의 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재무국이 도시건설로 갔을 경우에 108건을 의원 일인당 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원 일인당 처리건수가 12건으로 의안처리 건수에서도 거의 적정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李炳文委員 용산, 서대문, 동작은 보니까 시민국이 도시건설위원회로 편입이 되어 있네요. 우리 종로는 재무국을 도시건설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건 처리건.

○安哲柱議員 안건 처리건 그 다음에 업무의 밀접성, 연관성.

○李炳文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5조 1항 단서 삭제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하고 단서에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을 때 상임위원회 공백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삭제했을 때에, 왜 그렇게 삭제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安哲柱議員** 그래서 여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안에 사실상 종로구의회의 조례안에서 상임위원회 선임 시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본다면 지방의회 선거 후 최초로 구성되는 집회는 구청장이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었고 국회법을 기준 잡았을 때 요즘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후 그날이 바로 법정 개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10조에서 상임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임기 전에 선출해야 된다는 규정과 그 다음에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최초의 임시회 집회기간내에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을 이렇게 10조에 이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업무 공백상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李炯述委員** 임기 만료가 되고 난 뒤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위원회가 작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安哲柱議員** 그래서 제10조2항에 상임위원의 임기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만료가 되어 차기 상임위원을 구성하여야 할 때는 차기 상임위원회의 임기 개시 전에 구성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잘 해 나갔을 때는 아무런 공백상태를 예측할 수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참 좋은 것인데 이 상태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 되지 않고 넘어 갔을 때 공백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安哲柱議員** 그런데 국회는 각 교섭단체가 모여있는 곳이고 당리당락에 어떤 경우에는 당리당락에 의해서 법정 개원일이라든가 원 구성을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리당락 차원의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상임위원회 배정관계에 다소 불만을 품은 분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연될 수는 있으리라고 예측됩니다.

○**李炯述委員** 이 최초의 지금 국회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원 구성이 안되는 경우이고 우리 지난 초대 4년 동안에 상임위원회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같은 경우에 세 번을 다루어야 됩니다. 1기에는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원 구성하고 난 뒤에 2기에 가서도 제대로 안된 사태가 있습니다. 몇 달간. 처음 1기에는 그대로 상임위원 구성을 해 가지고 잘 넘어 갔는데 다음에 가서 상임위원회 구성하려고 했을 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돼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1년 동안 하던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조율이 안돼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다면 어떻게 공백기간을 조율이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차기 상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구성하도록 해 봤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 공백상태로 있을 때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공백이 생길 게 아니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安哲柱議員** 지금 현행 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봤을 때 상임위원회 임기는 시민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12일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들은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조제2항에 나와 있다시피 임기 개시 전에 선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서로간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민 복리증진과 위원회의 원할을 도모하려는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을 때 고의적인 위원회의 공백상태는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이번이 아닌 차기에서도 임기 개시 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 개시 전 마지막 임시회도 다루었을 때 여기 위원회의 공백상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李炯述委員 그런데 잘 되어가는 경우로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하게 삭제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과거 전례 1기에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선출할 때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난 뒤에 위원회가 공백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의원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 부분 삭제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부분은 삭제가 안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安哲柱議員 만약 삭제를 했을 때 10조1항과 2항 사항에서 선임일에 대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임할 수 있는 날짜에 대한 것을 정해놓고 다시 또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이중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李炯述委員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도록 해놔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1기에 봐 가지고 그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충족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왜 의원 스스로 족쇄를 채워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도 족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할 우리 상임위원회는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은 삭제 안하는 면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安哲柱議員 李炯述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토론시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예, 朴文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조금 늦어서 질의가 중복되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아마 의안 안전처리의 형평성에 맞춰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적고 시민행정이 과다하다 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재무국을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고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安哲柱議員 예.

○朴文培委員 그렇다면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소명자료가 있습니까? 과거에 왜 이렇게 잡았는가? 과거에 짠 것 왜 그런 것을 기히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양위원회를 구성할 때 6.27선거 이후 바로 구성할 때 문제가 있구나 왜 도시건설국은 인원이 적게 배정되고 시민행정위원회에 명수가 많은가 여기에 대한 기우심을 가졌던 바로 또 안전처리상 여러 국·실들이 시민행정국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다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싶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분류하는 과정에서 새삼 저도 합류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왜 과거에 이러한 의안별 조치사항에서 차등되는 이러한 분류 양개 분류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朴文培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朴文培委員이나 본 의원이나 1995년 6.27 선거에 의해서 제2대 종로구 의원으로 진출하신 입장은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의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그 동안에 위원회에서 처리했던 건수와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안전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해 나가면서 적정 업무 배분이 안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안을 마련했는지 그 전에 어떠한 구도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있는 위원회조례를 봤을 적에 이것은 1992년도에 조례 제187호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제2대 임기하고 관련되어서 다시 1995년 8월 1일날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는 그때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었지
만 시민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서로 상
임위원간의 이해와 다소의 마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러면 안전처리 사항은 형평성은 지금 安議員이
지적한 대로 수급이 갑니다마는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조율을 확인해 봤습니까?

○**安哲柱議員** 예산에 대한 것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체의 67%,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이 전체의 33%로 저희들이 행
정사무감사시에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와 예산심
의와 결산특위에서 다루어야 되는 예산부분에 대
한 것도 지금 균형이 안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본인이 제안설명했듯이 업무를 고른 배분과
또 각 의원들간의 업무의 형평성 그리고 위원회
의 소관 안전처리상에서도 서로 균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朴文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
의 없으십니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金以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우리 安哲柱議
員께서 우리 1기 때 우리 조례가 제정된 것을 다
시 수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
기 보니까 수정안으로 개정하신 것은 좋은데 인
원수가 지금 현재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
면 지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일이 많다 해가지고
인원이 11인과 9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
금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지 거
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
니다.

○**安哲柱議員** 현재 시민행정위원회의 11인과 도
시건설위원회 9인에 관한 것은 지금 개정안에서는

왜 그대로 두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을 마련할 적에 향후 의안 처리나 발생될
수 있는 요인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
무국에 관한 사항들은 그 안전들이 지난번에 구
유재산관리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의해 가지
고 전에는 3억 이상에 대한 것은 이 의회의 사
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5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무국
이 다소 많을지라도 앞으로 향후 재무국의 건수
는 점점 줄어들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수별
위원별 분석으로 해서는 당연히 거의 비슷한 숫
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발생할
것까지 계산했을 적에 도시건설위원회 9인으로
되도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되었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렇다면 지금 답변에서 현재는
업무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인원이 같아야 되는
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 내다보
고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금 의문
점이 갑니다. 앞으로 생각대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으나 기왕 지금 조정하
는 마당에서는 현재를 보고 형평에 맞게 했으면
인원수를 같이 나누어 가지고 해야 마땅하지 않
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安哲柱議員** 金以煥委員님께서 사항에 대한 것
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의안은 다소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똑같
은 인원을 그대로 두었을 적에는 사실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것은 굵직굵직한 안전들
이 많지만 시민행정위원회의 안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고도 섬
세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
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以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丁昌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종로구와 똑같은 구도로 시민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존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는 25개 구 중에 몇 개 정도의 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安哲柱議員 위원회가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는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각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자료로 제출했던 부분 중에서 종로구와 같은 입장에 있는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구는 중구, 용산, 서대문, 동작, 서초 25개 구 중에서 5개 구의 회를 기준삼아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것으로 배부드렸죠?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구는 종로구를 포함해서 6개 구가 되겠네요. 그러면 종로구만 시민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 타구는 개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安哲柱議員 개정이 되면서 거기다가 위원회 명칭이 길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중구같은 경우는 총무시민보건의위원회에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재무도시건설위원회로 이렇게 국 이름을 따가지고 명칭을 구체화했는데 저희 종로구는 이미 시민행정위원회에 대한 사항들은 오랫동안 계속 존속되어 왔던 위원회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해서 명패라든가 다른 부수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무국 소관사항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까지 명칭으로 써왔던 도시건설위원회보다는 재무국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명칭을 시민행정위원회는 그대로 도시건설위원회만 바꾸는 것으로 이

렇게 마련했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安哲柱議員께서 상임위원회 간의 업무 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매번 상임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원들이 신청하고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로 배속이 안되고 거기에 반해서 희망하지 않았던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되는 이런 사례가 한 3,40%정도 발생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상임위원회에 安哲柱議員님께서 재무국 소관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을 시켜서 업무 배정을 효율적으로 기한다는 말씀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의원이 감지된 상태에서 금년도 도시건설위원을 희망하는 의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6분은 부득이하게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95년도에 신청한 것을 봐도 상당한 의원님들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 배정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安哲柱議員 해 봤습니다. 차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상임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의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장님께서 상임위원 선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 선임권에 대한 것을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선임했을 적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령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선임되어야 될 경우 우리 종로를 중부, 서부, 동부로 나누었을 적에 한 지역에 세 사람의 의원을 배분한다는 원칙과 한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교류의 원칙이라든가 또 특히 지금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네 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에서는 한 분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신청은 어느 상임위원회를 희망했든지 그 동안에 상임위원의 재임기간 그리고 지역의 안배, 그 동안의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사항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장님께서 자료를 분석해서 배분했을 적

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굳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의원들이 종로구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지 자기 지역사업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선임권은 지금 의장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인원과 어떻게 희망했는지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丁昌熙委員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종로 전체를 위하고 합리적인 업무의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의 운영이 된다고 치면 가장 이상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결정하더라도 이렇게 신청에 언발런스가 클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데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安哲柱議員님 말씀대로 승복을 흔쾌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배정할 당시에 지금 安哲柱議員이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여섯 분밖에 안되는 동부지역에서 네 분이 도시건설로 배정이 되었고 일곱 사람이 있는 서부지역에서 네 사람이 배정이 되고 여덟 사람이나 되는 상임위원회에 한 분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역간의 그런 불균형 역시도 시정을 해야 될 이상적인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지켜지지 않았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1항과 2항에 대한 현행 조항이 지금 개정안에 보면 1항과 2항이 현행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이 현행과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하고 1항과 2항을 신설을 해서 기존적인 현행상의 10조 1항과 2항을 없애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우선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선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1항 신설입니다. 2항도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1항과 2항은 3항, 4항으로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丁昌熙委員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대비표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토론시간에 하실 것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하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3조 2항에 위원회 명칭을 재무건설위원회로 한다고 해 봤는데 지금 국·실을 보면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구에 봐도 도시건설위원회를 재무도시건설위원회라고 한 곳도 있고 한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무도시건설위원회로 각 국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도시를 하나 더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재무건설위원회로 도시를 빼고 명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安哲柱議員 중구 같은 경우에 재무도시건설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재무국과 도시건설위원회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기했으면 하는 李炯述委員님의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회의 명칭을 개칭하면서 가능하면 그 명칭을 우리가 이미 5년동안 써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인식되어 온 것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민행정위원회같은 명칭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구민들한테 알려진 사항이고 재무국 소관이 그 동안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계상 재무국이 우선입니다. 도시를 먼저 집어넣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재무, 그리고 도시라는 그 자체에 대한 것 건설분야에 대한 것은 건설이라는 용어 자체로 해서 이미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회 명칭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이 명칭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羅在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安哲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以煥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이신 安哲柱委員께서 인원을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원을 같이 10명씩 나누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委員長 羅在岩 참고로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짝수일 경우에는 조금 혼란이 오기 때문에 홀수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1명, 9명 이렇게 되었는데 9명, 11명으로 바꿀 수는 있되 그 자체를 10명, 10명으로는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질의시간에 질의한 것을 다시 토론하고 싶습니다. 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단서규정 삭제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삭제했을 때에 차기 임기.

○委員長 羅在岩 어느 부분입니까?

○李炯述委員 위원회조례 제5조 단서부분 삭제부분에 대해서.

(○金以煥委員 議席에서 - 얘기를 하다 말았네. 넘어가 버리고. 그렇다면 이쪽을 11명으로 하고 저쪽을 9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건설로 지원자도 많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쪽을 11명으로 하고 그쪽을 9명으로 한다.)

○委員長 羅在岩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재무국의 업무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을 참고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행정위원회의 안건은 줄지 않고 재무국 소관 업무가 줄어든다는 사항을 아까 安哲柱委員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참고

(○金以煥委員 議席에서 - 그렇다면 꼭 재무만 넣을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쪽으로 넘기든지 해 가지고 왜 많은 위원님들이 건설위원회로 많이 가려고 선호를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고 꼭 시민행정이 11명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려는 사람이 15명인가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숫자를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배분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우리 金以煥委員이 배정인원을 9명을 11명으로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토론을 하다가 金以煥委員이 하는 답이 완전히 결론 내리기 전에 토론을 해서 미안합니다. 委員長이 중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보면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다만 새로 상임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할 때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단서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단서규정이 새로 상임위

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에는 선임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부분을 삭제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의 임기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료되어 차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때는 차기 상임위원회 임기 개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뜻을 박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상임위원회는 공백상태가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도 얘기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언제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뜻을 박아 넣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에 본 위원은 삭제부분을 있는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는데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 부분을 삭제했을 때 상임위원회 임기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료되어 차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때에는 차기 상임위원회 임기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우리 李炯述委員이 상임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에 대한 安哲柱議員의 삭제조항에 대한 반론인 것 같습니다. 李炯述委員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朴文培委員! 말씀하십시오.

○朴文培委員 재청을 하면서 한 번 더 참가해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사실 李炯述委員이 지적하신 대로 5조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10조 단서도 삭제되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조 단서와 10조 1,2항도 다 삭제되어서는 안될 사항으로 보는데 굳이 문맥을 삭제해서 불필요한 휴회 기간이라든가 권한 행사를 못해서 의회가 마비되

는 행정규칙 모든 것이 마비되는 이러한 상태가 초래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삭제부분을 다 살리는 방향에서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5조 단서를 삭제해서 차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했을 때 재임기간 중에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만 구성되지 아니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첨부시킨 것입니다. 5조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해서 밑에다가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李炯述委員께서 동의 발언을 해서 朴文培委員이 재청을 해서 이루어진 제10조제2항 신설조항 중 단서규정으로 “다만 회의 소집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까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신설조항 중 단서규정으로 “다만 회의 소집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4표입니다.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舉手하는 委員 없음)

그리고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찬성함으로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0조제2항의 신설조항 중 단서규정으로 “다만 회의 소집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로신문의
건은 내일 모레 10시에 개의해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잘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하셨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께서는 7월 1일 오늘 오후 4시에 심사보고서 채
택 회의를 하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
포합니다.

(11時14分 散會)

○出席委員 8人

羅在岩 安哲柱 李炳文 玄壽漢 李炯述
丁昌熙 朴文培 金以煥

○出席專門委員

尹柱彩 蔣昭秀

